

## 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### | 지방세법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13조(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)**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